

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 안내문

2021년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달라집니다.

□ 제 20조 위험물 자격제도 도입 (공포 '20.6.9. / 시행 '21.6.10.)

- (추진배경)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시 피해규모를 고려한 개선조치

17.11.02.	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	사상자 10명(사망 3, 부상 7), 차량 10대 소실
15.10.26.	상주터널 화물차 화재사고	부상자 20명(중상 1, 경상 19), 차량 9대 소실

- (주요내용) 운반자 자격요건 및 무자격자 벌칙 신설

※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수료 / 1천만원이하 벌금

□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(공포 '20.10.20. / 시행 '21.10.21.)

- (추진배경) 장기간 방치된 휴·폐업시설의 사고 위험성 저감조치

※ 내부지침에 따른 '휴지'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관리 강화

- (주요내용) '사용중지' 명시, 안전조치 및 중지신고, 안전조치 이행 명령권 및 불이행시 제재처분*,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
* (행정명령) 제조소등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, (형벌) 1천5백만원이하 벌금

□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(공포 '20.10.20. / 시행 '21.10.21.)

- (추진배경)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개선

※ '18.10.7.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

- (주요내용)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 제출, 미제출시 과태료

* 기타 위험물 안전 관련 문의 : 용인소방서 소방민원팀 ☎ 8021-0327

용 인 소 방 서 장